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주식회사풍금
소유물건(2024타경113487)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평가서번호: GR2024-1226-0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 소 영

감정평가액	일억팔천칠백만원정(₩187,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풍금 (2024타경113487)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1.08	2025.01.08	2025.01.08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87,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8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역(부산1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람 아파트" 제14층 제1401호로서,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 없음.

4. 감정평가방법

- 1)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 2) 본건은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1월 08일자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실지조사·실지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5년 01월 08일자 이고, 가격조사 완료일은 2025년 01월 08일자이며, 목록표시근거 상의 공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1) 위치확인

본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 현관 출입문의 표시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참고사항

본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 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 및 표준적 사양 등을 참고하였으나 내부 확인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7-6 외 2필지				
건물명		아람아파트				
구분		전유(m ²) (A)	공용(m ²) (B)	전체(m ²) (A+B)	대지권(m ²)	전용률
1	제14층 제1401호	51.925	18.9188	70.8438	11.753	73.3%
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용승인일자	2014년	11월	28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거래가격 단위 : 천원】

사례	소재지	건물명	동 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가격 (단가)	거래시점
							신축년도
#1	하단동 617-*	아람 빌리지	101 9/90* (오피스텔)	26.12	3.915	95,000 (@3,640)	2024.09.24
							2016.04.07
#2	하단동 617-*	아람 아파트	13/130* (아파트)	43.9469	9.948	190,000 (@4,320)	2023.04.10
							2014.11.28

▶ 단가 : 거래가격 ÷ 전유면적 기준

▶ 자료출처(실거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비교사례의 선정

위 거래사례 중 감정평가 대상물건과 물적 제반사항이 비교적 비슷하며, 최근에 거래된 **【사례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위 비교사례 물건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4.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요지역별,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 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월별 부산광역시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2021.06 = 100.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99.81	99.64	99.42	99.27	99.08	98.79	98.64	98.4	98.06	97.83	97.56	-

[시점수정치 산출]

사례 기호	구 분	기준시점 지수	거래사례시점 지수	시점수정치
#1	매매가격 지수	97.56 (2024.11)	98.4 (2024.08)	97.56 / 98.4 = 0.99146

▶ 시점 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 소수점 6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 기준시점 지수 : 시점 당시 최종 발표된 지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 1 : 비교사례 #1】

구 분		격 차 율		비 고
조건	세 부 항 목	사례	대상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1.00	본건은 사례와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 전반적인 외부요인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건물 요인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1.00	0.99	본건은 사례 대비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에서 다소 열세함.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개별 요인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1.00	1.01	본건은 사례 대비 전유면적의 면적에서 열세하나 층별 효용에서 우세함.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기타 요인	전유·공용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1.00	1.00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별무함.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누 계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기호	거래사례(원) (단가:원/m ²)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대상/사례) (m ²)	산출가액(원)	시산가액(원) (단가:원/m ²)
1	95,000,000 (@3,640,000)	1.00	0.99146	1.000	51.925 /	187,241,510	187,000,000 (@3,600,000)
					26.12		

▶ 단가 : 전유면적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및 결정 의견

1. 가액결정 참고 자료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감정평가사례

【단위 : 천원】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 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단가)	기준시점
								신축년도
#1	하단동 617-*	아람 빌리지	101 9/90*	22.44	3.364	법원경매	77,000 (@3,430)	2024.10.31
								2016.04.07
#2	하단동 617-*	아람 빌리지	101 7/70*	22.02	3.301	법원경매	72,000 (@3,270)	2024.10.07
								2016.04.07

▶ 단가 : 전유면적 기준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2) 인근지역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도로조건	이용상황	가격수준(전유기준)	비 고
본건 인근	-	오피스텔	3,500,000원/㎡ ~ 3,700,000원/㎡ 내외	-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에 관한의견

층별 및 호별 효용에 따른 규모별 가격편차가 나타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기호	층, 호수	전유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단 가(원/m ²)	비 고
1	제14층 제1401호	51.925	187,000,000	@3,600,000	-
합 계			₩187,000,000.-		

▶ 단가 : 전유면적 기준

3. 결정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및 인근 유사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 수준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앞에서 살펴본 참고자료 및 대상 목적물의 특수성,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역(부산1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람아파트 제14층 제1401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용건물 및 중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1호선(하단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중 제14층 제1401호로서,
외 벽 : 석재치장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이며,
내벽 및 바닥은 페문, 부재로 미조사 됨.

(4)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일단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접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2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50m)<건축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광역 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7-6 아람아파트 14층 1401호
-----	-------------------------------------



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7-6 아람아파트 14층 1401호
-----	-------------------------------------



건물개황도

[아람아파트 제14층 호별배치도]



기호(1) 1401호

